

예산총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03,057,845	21,091,735
일반회계	678,173,820	20,345,215
특별회계	24,884,025	746,521
기타특별회계	24,884,025	746,521
의료보호특별회계	2,649,487	79,485
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	884,284	26,529
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17,702,596	531,078
주택사업특별회계	533,196	15,996
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	3,114,462	93,43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 세입·세출 예산 "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625,29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.